

생생리포트

- 서울시 개인파산에 대한 심층의견조사
박지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연구원)
박희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부연구위원)

서울시 개인파산에 대한 심층의견조사

박지희 연구원 · nanaplia@sdi.re.kr

박희석 부연구위원 · hspark@sdi.re.kr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 개인파산은 소비자금융과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 이후 시차를 두고 급격히 증가하였음
 - 특히,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의 소비능력이 실제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것이 수월해짐
 -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 불황이 맞물리면서 실직 혹은 퇴직으로 인해 지급이 불가능한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짐
 - 개인파산에 이른 원인 가운데 보증으로 인한 채무, 사기 등과 같이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는 문제가 다수 존재함
 - 급증하는 개인파산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사회 불안 문제와 인적자본의 사장 혹은 마모 등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제도 마련이 필요함
 - 또한 개인파산 이후 이들이 다시 중산층으로 편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본 의견조사는 증가하는 개인파산의 문제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하고자 기획됨
 - 이를 통해 향후 서울시의 개인파산자 관련 제도 및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본 조사는 I. 개인파산 제도 개관, II. 전문가 심층의견조사, III. 시민의견조사 세 부분으로 구성됨
- 개인파산자 관련 온라인 설문에 협조해 주신 김관기 변호사님과 설문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 개인파산제도 개관

1. 개인파산의 정의 및 특성

-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경제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상태에 처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며, 다만 소비활동에서 연유한 개인파산인 경우는 소비자파산으로 통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혼용하여 사용함(삼성경제연구소, 2000, 김범식·전효찬)
- 개인 채무자가 면책 신청을 하면, 법원은 일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을 경우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음(노진호, 2004)
-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은 개인은 조세, 벌금 등 일부 채무를 제외하고는 채무 이행 의무로부터 해방되며, 파산선고 이후의 불이익으로부터도 해방됨(노진호, 2004)
- 파산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제약 또는 불이익이 너무 많아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파산을 신청하고 싶어도 해고되거나 취업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신청을 꺼리는 문제가 있었음(김형두, 2006)
- 대법원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한국개발원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분석」(2005)에 따르면, 약 260여개의 법률에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자격제한을 가하고 있어서 비록 곧 복권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파산자의 경우 일단 퇴직 사유에 해당됨

〈표 1〉 개인파산에 따른 신분상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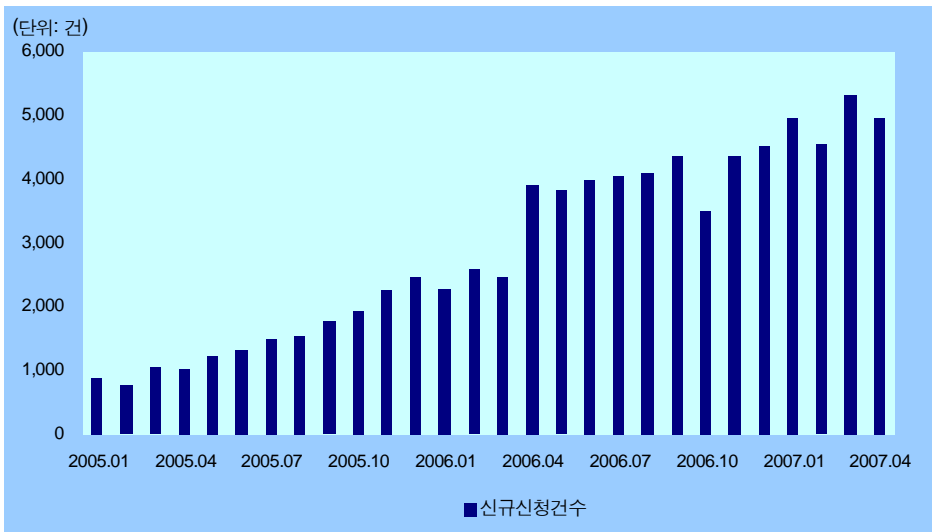
제 한	예 시
법적 제한 ¹⁾	국가·지방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간호사, 한의사, 건축사 은행의 임원, 공익법인의 임원, 학교법인의 임원 등 민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신탁법상의 수탁자 등
경제활동 제한	신원증명서에 파산선고 사실 기재(취직 또는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금융기관의 이용(은행으로부터 대출 또는 계좌개설 불가 등) 기타(취업을 위한 신용보증보험 가입, 핸드폰 할부 구입 등)

1) 2006년 4월 1일 시행된 통합도산법 제33조의2 에는 차별적 취급의 금지가 명시됨. 이와 동시에 파산선고자에 대한 사법시험 응시자격제한 규정이 폐지되었고, 변호사 사무직원 및 법무사 사무원의 자격제한 규정도 폐지됨(김형두, 2006)

- 또한 같은 보고서에서 미복권 파산자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수입 및 제조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음(남극활동 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국비유학생시험에응시할 수 없음(국외유학에관한규정) 등 이해하기 힘든 자격상의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밝힘

2. 최근 개인파산 증가 추이와 원인

-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신규개인파산신청건수를 보면, 2005년 총 17,772건이던 것이 2006년에는 44,050건으로 약 2.5배 가량 증가함
- 또한 2007년 1월 ~ 4월 서울중앙지법의 누적 신청건수가 19,812건으로 2006년 같은 기간 (11,280건)에 비해 약 1.8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적으로 보면, 1996년 최초의 개인파산 발생 이후, 1999년 505건까지 증가한 이후 2000년(329건)에 다소 주춤하다가 2004년 12,317건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임(2006, 유경원, 우리나라 개인파산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 이후 전국의 파산신청건수는 2005년 38,773건, 2006년 123,691건으로 2004년에 이르러 10,000건을 넘긴 신청건수가 불과 2년 사이에 10배 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함



출처: 법원통계월보

<그림 1> 서울시 개인파산 신규 신청건수

- 전국은 물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06년 4월 통합도산법²⁾ 시행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통합도산법은 파산과 면책의 동시신청 허용, 파산선고후 강제집행 정지, 면책재산의 확대, 면책 후 강제집행시 벌칙규정 신설, 공고방법 규정의 개정 등 파산신청자의 권익을 신장하고 파산절차도 간소화하여 개인파산신청 증가의 한 원인이 됨
- 한편, 신용불량자³⁾중 많은 수가 아직 개인파산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파산 상태에 있으므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잠재파산자의 규모를 가늠하는 한 잣대가 될 수 있음
- 유경원(2005)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대비 개인파산 신청추이가 1999년 0.025%에서 2004년에는 0.341%까지 증가하였으며, 2002년~2003년 사이에 발생한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가 개인파산 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인다고 밝힘



<그림 2> 개인파산 증가 원인

2) 정식명칭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로,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등 도산3법과 개인채무자회생법 등 4가지로 흩어져 있던 관련법률을 하나로 통합한 것임

3) ‘신용불량자’ 개념은 2005년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개인의 연체 기록은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제공기관의 독자적인 판단을 부가하지 않은 채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과 함께 개별금융회사에 판단자료로 제공되므로, 논의의 편의상 이 글에서는 과거 신용불량자의 용어를 이용함

3. 개인파산 관련 기존 연구 동향

- 1996년 개인파산에 대한 첫 선고가 있는 후 IMF를 거치면서 개인파산신청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함으로써 개인파산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짐
- 그러나 파산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은 거의 없었으며, 2005년 법원행정처의 용역에 의한 일부 파산자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한국개발연구원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공식적인 파산자 자료에 근거한 유일한 연구임
- 개인파산 증가 원인에 대해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개인신용의 신장과 함께 증가한 신용불량자 문제, 경기침체로 인한 외부적 요인을 주된 원인으로 지적함
- 개인파산 증가에 대응하는 대책으로는 파산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제도 마련⁴⁾, 자동적 정지(automatic stay)제도⁵⁾의 도입을 비롯한 파산관련법의 보완, 채무보증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함

<표 2> 국내 개인파산 추이

시 기	구 분	내 용
1997~2001	외환위기 직후의 시스템 붕괴	개인파산 미미 주로 연대나 담보 등 금융관행에 따른 파산
2001~2004	경기회복을 위한 소비자금융 확대	개인파산 증가세 신용카드 과다사용에 따른 “과소비형” 파산
2004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와 경기양극화 심화	개인파산 급증 경기침체, 고용 및 소득 감소 등에 의한 “불황형” 파산

자료: 박덕배(2006) p2 표를 재구성함

4) 미국에서는 소비자신용협회(NFCC, National Foundation for Consumer Credit)의 하부조직인 소비자신용상담서비스(CCCS, 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파산의 대안을 전화나 통신을 통하여 상담하고 있음(김난도, 1998)

5) 파산신청과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을 자동적으로 보전하여 일체의 채권회수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임

II. 전문가 심층의견조사

대상: 김관기 (파산전문 변호사)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기간: 2007년 6월 12일 - 6월 13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05년 17,772건에서 2006년 44,040건으로 2.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2007년 1월~4월 현재까지 19,81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1,280건에 비해 8,532건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개인파산이 급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개인파산 증가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정찬우 연구위원 개인파산이 증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소위 못 사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자력으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진 사람이 더이상 갚아나갈 여력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법에 개인파산을 통해서 채무를 면제 받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 채무구조 자체가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금리가 과도하다든가하는 이유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되어서 파산제도로 가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서민층 경제력 약화이다. 경제력 약화를 복구시켜 주기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필수적인데, 제도권 금융기관이 소위 신용도와 담보력이 낮은 서민층에 대한 대출을 늘리지 않고, 거의 취급도 안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업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도 있다. 서민들은 금융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취할 수 있는 선택에 제한이 있는 것이다.

▶ 김관기 변호사 개인파산 사건은 전국적으로 보면 대략 매년 3배 가까이 증가해 오다가 2007년에는 증가율이 그나마 조금 둔화된 것이다. 3배 가까이 팽창했던 것은 사실상의 파산은 늘 있어왔는데, 법적인 절차로서의 파산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보호받지 못한

채무자가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004년 ~ 2005년 이후 채무자 문제로 사회불안 문제가 커지겠다는 법원의 반성에 의해서 파산보호를 시작하였다. 그것이 지금 정리되는 과정이다. 과거 누적되었던 채무자가 조금씩 정리되는 과정에서 외견상 급격히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일 뿐이지,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다. 현재 신청건수는 제도의 개선이 없는 한 유지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채무자가 생존할 수 있는 미국의 공정채권추심법 같은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훨씬 줄어들 것이다. 현재는 추심이 악랄하여 빚독촉을 면하려고 파산을 신청하는 상황이다. 지금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 중 채권추심만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안와도 될 사람들이 90% 정도 된다.

▶ **박창균 교수** 근본적으로 소비자 부문 부실이 상당히 많이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신용불량자, 이들이 결국 파산 예비군이라고 보면 된다. 파산이라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들이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파산이 제일 먼저 인정된 것은 1996년이다. 그 이후에도 1년에 10건, 8건 되어 오다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이후로 아직 얼마되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개인 부실채무자가 정리가 안된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파산이 앞으로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본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부실채무를 정리하는 메커니즘은 크게 공적인 메커니즘과 사적인 메커니즘이 있다. 사적인 메커니즘의 대표적인 것이 개인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이고, 공적인 메커니즘에 개인파산과 회생이 들어간다. 이때까지는 정책적으로 채무자들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으로 많이 유도를 해왔다. 그러나 공적인 기구인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것이 정석이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이 남의 돈 빌려가서 안갠는 무책임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조치는 아니다. 경제이론적으로 보면 그것은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으로서 우리사회가 가져야할 제도이며, 나름대로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일방적으로 구제한다거나 시혜를 베푸는 조치가 아니고, 사회전체의 경제시스템이나 금융시스템이 기능을 하는데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특히 부실채무자들 몸에 체화되어 있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사장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제도이다. 앞으로는 정책의 중심이 공적 파산제도를 강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채무가 부실화되고 파산에 이르기까지 최소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걸린다. 결국 지금 파산신청해서 파산선고를 받는 사람들은 개인채무,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2002년 ~ 2004년 이 시기에 돈을 빌려쓰고 부실화된 사람들이다. 가

계부채 증가추세가 안정되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가 강화된 2004년 ~ 2005년 이후 안정세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즉 그것이 파산에 까지 영향을 주려면 향후 5 ~ 6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 이미 파산을 통해서 처리되어야할 부실채무가 엄청나게 쌓여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는 파산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2. 서울신문의 「2004 개인파산 보고서」에 따르면 파산자의 과거 5년간 경력 기록을 볼 때 사무직 종사자가 52.6%로 가장 많고, 소규모 자영업자(22.9%)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사무직 종사자와 자영업자의 개인파산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찬우 연구위원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입할 수 있었던 계층은 담보를 갖고 있었던 자영업자이거나 중소기업 사무직 종사자이다. 아예 담보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은 돈을 못 빌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기존 채무자 중에서 확률상 이들의 비중이 높은 것이다.

▶ 김관기 변호사 사무직 종사자는 그동안 고용이 너무 취약했다. 이것은 97년 이후의 고용불안과 관계있다. 사무직 종사자는 구조조정의 첫 대상이며, 전직이 쉽지 않다. 단 순생산직도 평생 해온 일을 계속 하면 노동의 숙련도가 다르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을 수 있고,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데 사무직은 다르다. 사무직은 그 기업에 뼈를 묻게 되어 있다. 그런 사람들을 고용불안 상황에 내몰면 사무직에서 나와서 자영업을 차리게 된다. 여태까지의 안정된 상황에서 밀려나면, 그동안 쌓아왔던 인적자본(human capital)이 쓸모없게 된다. 그래서 이들이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각종 창업아이템이 언론을 통해서도 선전되고, 창업자금 대출까지 해 준다. 그러나 현대의 추세는 자영업자가 경쟁력에서 밀리다 보니, 든든한 자본이 없는 한계사업자들은 도태되는 것이다. 우리도 당장 동네 슈퍼마켓 대신에 대형마트로 가지 않는가? 이런 현실이 반영되어 사무직 종사자, 자영업자의 파산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박창균 교수 개인적으로 사무직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순전히 신용카드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이들이 2000년 ~ 2002년까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거의 무제한으로 신용공급을 받았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시장점유율 확장 경쟁 때문에 카드를 무책임하게

남발했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이 무책임하게 카드를 남발하고 그 결과 그 사람들이 파산상태에 도달한 영향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다. 소규모자영업자가 많은 것은 서비스업, 소위 영세자영업(도소매, 유통, 음식, 숙박)이 장기불황으로 사업형 파산이 생긴 것이다. 이에 비해 사무직 종사자는 소비형 파산이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2004년 이전에 3~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왜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는지는 드러난다.

3. 개인파산급증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보완점 혹은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찬우 연구위원**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산 형성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일할 수 있는 계층이 줄고 있는데,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계층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 **김관기 변호사**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없다. 다만, 면책을 인정하게 되면, 이자율이 조금 오를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이미 현재 신용카드 대출이나 대부업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상당히 높은 상태이다. 면책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금융기관은 매일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절망적인 대출행위를 함으로써 걱정수준 이상의 금융행위가 일어난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도 있다. 흔히 파산제도를 인정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게 되어서 금융비용이 너무 높아지게 될 것이고 금융이 불안해지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말이 안된다. 세계에서 가장 관대하게 면책제도를 인정하는 미국이 금융산업이 가장 발달했다. 파산법에 의해서 금융이 규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융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융에 대해 해가된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다. 보완점으로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파산제도가 미흡하다. 실물경제 상으로는 파산이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해방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당하다.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로 계속 강제 노역을 해서 빚을 갚게 한다면 그것은 노예제도이다. 이것은 노예제도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당하다. 둘째, 내수를 확충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 벌어서 70만원 갚는 사람은 갚아도 추심업자, 부실채권업자를 먹여살리는 셈인데 결코 핸드폰이나 디지털카메라, 자동차

같은 걸 못산다. 대중이 과소비를 안하고 정소비만 한다면 내수를 진작시키기도 어렵다. 셋째, 인센티브의 문제이다. 임노동자는 남는 건 저축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중산층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할 수 있다. 넷째, 사회안전망의 부담을 감소시킨다. 노동자가 일하지 않고 들어앉아 있으면, 위기가정지원(자치단체같은 차원), 국민기초생활보장(국가차원) 등의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적으로 연구할 문제이다. 파산제도가 금융제도의 건전성을 높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의 생각이다. 파산제도는 주식회사와 비슷하게 유한책임을 개인에게도 인정하는 것이다. 유한책임이 인정되는 근거는 경제에 유익하고, 모험적 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개인이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 이것은 미국에서는 20세기 초에 논쟁이 끝난 문제이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지 않을 뿐, 유한책임과 파산제도가 주는 경제적 효익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Consumer Bankruptcy Project 가 2차에 걸쳐서 시행되어 그 연구 결과로 As we forgive our debtors 같은 단행본도 내놓았다. 미국 의회가 연구원을 위촉하여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들이 누구인가?” 를 밝혔다. 파산이라는 현상은 일반적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누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둘째,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부담을 내부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둘째를 택하여야 한다.

▶ **박창균 교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파산자가 늘어나면 금융회사가 부실해지고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파산자들에게 대한 부채는 금융회사가 대손충당금으로 다 쌓아놓았기 때문에 파산자에 해당하는 부채는 안갯아도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혹시라도 갚으면 특별이익금으로 들어와서 과외수입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볼 때, 파산자한테 빌려준 돈은 못 받을 돈이라고 라벨을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금융회사 건전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금 우리사회의 프로파간다(propaganda)이다. 단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개인파산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이루어지고 증가하게 되면, 멸절하게 돈을 갚을 수 있고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소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해서 신용문화(credit culture)가 망가지는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 가지 증거로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신용문화(credit culture)가 나름대로 건전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2006년 연구한 설문조사(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 한국개발원

구원)에서 법률적으로 파산자에 대해 아무런 차별적 조치가 없고, 어떤 차별조치도 없도록 법률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파산에 대해 엄청난 위축감을 느끼고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에 대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측면만을 봐서도 개인파산이 급증하는 지금의 추세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불안전성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개인파산의 급증이 금융회사한테 규율장치(discipline device)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파산이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경우, 우리사회에서 개인이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후 안갯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회사는 정리하면 끝나는데 사람은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하고 소득을 만들어내면 계속 채권자가 와서 가져간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미 그 사람한테 받을 돈은 이미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해서 대손으로 상각해버렸기 때문에, 십원이라도 더 받는건 다 특별 이익이다. 끊임없이 채권 추심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이 가능하다. 이자만 가지고도 원금 플러스 이윤을 내기 때문이다. 파산이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서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이다. 그러나 파산이라는 시스템이 있으면 아무한테나 돈을 못 빌려준다. 아무한테나 돈을 빌려줬다가 그 사람이 파산해버리면 못 받는다. 그러므로 금융회사 입장에서 볼 때도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는 상당히 중요한 장치이다. 만약 파산이라는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다면 1999년, 2000년대 초에 신용카드 회사들이 그렇게 황당한 일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카드회사들이 빌려줄 때는 원금을 좀 때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자 20%씩 착실하게 받아먹고 열심히 채권추심해서 회수율을 극대화하면 남는다. 실제로 그랬었고 관리가 가능할 때 그렇다. 그런데 대규모로 터지니까 불가능해지고 문제가 생긴 것이다. 만약 그 때 개인파산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파산으로 가면 돈을 못 받는 것이다. 돈을 빌려줄 때 아예 갚을 사람인지 못 갚을 사람인지를 금융회사들이 알아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안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다. 지나치게 개인파산 제도의 장점만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는지 몰라도, 적어도 개인파산제도의 가장 부정적인 효과가 멀쩡하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이 파산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많지 않다. 경험적 증거가 없다. 파산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미국에서조차 증거가 없다. 단지 이론적인 가능성이 열려있을 뿐이지 반드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파산은 새로운 문제의 출발점이 아니라 기존 문제의 결과라고 보

이야 한다. 파산으로 새로운 문제가 잉태가 될 것이라는 건 이론적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찾기가 힘든 주장이다.

4. 마지막으로 개인파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정찬우 연구위원** 소위 신용도 혹은 경제활동능력이 취약한 계층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오게 하는 것이다. 금융측면에서 보면 금융지원의 확대가 필요한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금융기관이 문을 닫은 근본적인 이유는 부실자산이 많아서였다. 따라서 그 이후 여신기능이 있는 금융기관들이 소위 이자부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담보대출금리를 보통 10% 미만으로 보고, 대부업법의 금리상한을 지키는 66%를 빼면 10%~66% 사이의 신용대출 상품이라는 것은 전체 여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다. 그것이 주로 소액신용대출, 카드회사의 카드로, 캐피탈 등이다. 그러나 워낙 절대량이 작다. 이런 것들을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금융기관은 과거에 부실이 쌓이면 망한다는 경험때문에 확대를 안하려고 한다. 요근래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부잔액대비 몇 십%에 달하는 큰 이익을 얻고 있다. 이것은 소위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취약해서 제도권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제공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금융소외계층 중에서도 잘 살펴보면 신용대출을 해주었을 때, 원리금 상환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부분이 없어서 소외되는 부분은 수익성이 남는 일이므로, 최대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상업적 베이스에서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 상업적 베이스로 인한 소액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휴면예금 등을 이용한 대안금융공사를 만들어 주거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에서 흡수하는 것이다.

▶ **김관기 변호사** 개인파산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그것은 부실채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도움이 될 뿐이다. 예를 들어 4000만원 빚을 진 영세 가구에 돈 500만원을 먹고 살라고 주어도 부족할 판에, 그 이자를 대신 갚아 주는 식의

지원을 해보았자 채무 불이행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 파산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차라리 빨리 파산으로 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 비용으로 공공변호사를 채용해서 대리를 하게 해 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파산 뒤에 살아 나온 사람들(면책 받은 사람들)은 빚을 면했지만, 가진 것도 없어서 노숙자를 간신히 면한 수준이다. 따라서 자활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주거지원” 과 “직장알선” 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나 살아보자.

▶ **박창균 교수** 신용상담사(credit counselor)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안되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신용상담사제도가 실제로 개인부분 건전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경험적 증거는 무지 많다.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결론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유용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기기 전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용상담사들은 평상시에 소비자 금융교육을 한다. 다른 한편은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한다. 상담을 하면 그들의 자세한 부채관계를 다 조사해서 이용가능한 여러 가지 제도 중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게 뭔지 선택을 한다. 예를 들어, 바로 파산으로 가야할지, 금융회사와 사적으로 채무재조정을 해서 갚으면 좋을지를 선택한다. 파산으로 가면 미국에서는 5년~8년간 금융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최소 5년간 금융거래가 완전히 봉쇄된다. 될 수 있으면 파산으로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서로 좋은 것이다. 채무재조정이란 쉽게 말하면 빚을 깎아주는 것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볼 때도 예를 들어, 100원의 채권이 있더라도 이미 이진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0원이라도 갚겠다고 하면 좋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협상이 이루어진다. 결국 이 신용상담사는 잘 모르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전문가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는 갚을 수 있고 채권금융회사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채무재조정을 만들어낸다. 미국에서는 소위 개인워크아웃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들이 만든 협의체이기 때문에, 채무재조정을 할 때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신용상담사들은 채무자를 대표해서 채권자의 대표자와 만나서 전문적인 협상을 하기 때문에 전혀 입장이 다르다. 채무재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수락할 것인지 법원에 갈 것인지를 두고 협상한다. 채무자도 법원으로 가면 금융거래 봉쇄 등 여러 가지 손해가 있지만, 채권금융기관 입장

에선 법원에 가면 십원도 못받는다. 그래서 빨리빨리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진다. 그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무지 많다.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먼저 시작할 수 있으면 좋다. 여기에 큰 돈이 들지도 않는다. 미국에서 금융상담사들의 수입원은 크게 3가지인데, 정부지원금(subsidy), 금융회사와 채무재조정을 받은 개인들(fee), 기부(donation)이다. 기본적으로 비영리기구(non profit organization)이기 때문에 큰 돈이 들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볼 때, 금융회사에서 정년퇴직하는 사람들 몇 십명 정도 모아서 사무실을 차리고, 실경비 정도만 지원해서 전문성도 활용하고 좋은 일도 하도록 하면 된다. 미국의 경우 신용상담사 사무실이 전국에 2000개가 넘는다. 카운티마다 다 있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군마다 다 있는 셈이다. 미국에서 이것은 비즈니스 모델이다. 처음에는 비영리기구로 출발했는데 실제로 돈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교육할 때 돈을 받고, 채무재조정을 할 때 금융회사로부터도 돈을 받는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실을 유지하는 비용이 안드니까 자기들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돈을 낸다. 물론 채무자도 개인에 따라 낼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낸다. 신용상담사는 미국 뿐 아니라 영국, 아일랜드에도 정착이 되어 있다. 유럽 대륙에는 별로 없다. 그 이유는 유럽대륙에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자체가 들어온 지 얼마 안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영미 계통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로 이미 자리를 잡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파산법이 미국 파산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개인 부실채무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 미국 파산시스템에서 괜찮은 몇 가지 것들을 들여올 필요가 있다. 사실 본인이 보유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게 대부분의 개인인데, 개인들이 복잡한 채권채무관계에서 재협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람이 돈이 있다면 자기 돈으로 하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이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빨리 정리해주는 것이 사회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 되니까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다. 파산, 희생하는 사람들을 돈을 못갚아서 불쌍하니까 구해주겠다는 시각은 버려야 한다. 그들이 예쁘거나 불쌍해서 파산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 보다 운영하는 것이 사회전체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정부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금융감독의 제1목적이 금융소비자 보호여야 하는데, 금융산업 육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들여오더라도 금융산업 입장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본질이 희석된다. 적어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개인 파산시스템에 대한 관점이 크게 잘못된 근본적인 원인이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III. 시민의견조사

대상: 개인 파산 경험이 있는 서울 시민

방법: 개인파산자들의 온라인 모임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⁶⁾

(<http://research.joongang.com/survey.php?act=v&id=07-9-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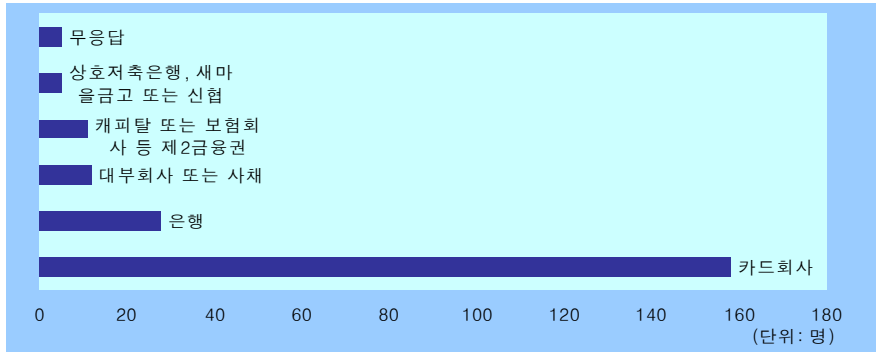
기간: 2007년 6월 18일 - 6월 25일

개인파산자들의 온라인 모임을 통해 서울시 개인파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전체 308명이 참여하였으며, 이중 파산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19명이었다. 설문에 대한 분석은 파산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19명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징을 보면, 성비는 남자 111명, 여자 107명, 무응답 1명이며, 연령대는 20대가 10명, 30대 105명, 40대 71명, 50대 27명, 60대 이상 5명, 무응답 1명으로 나타났다. 219명 가운데 기혼은 165명, 미혼은 52명, 무응답 2명이며,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177명, 없다는 응답은 40명이며, 무응답이 2명이었다. 응답자의 학력분포는 초등학교 졸업이 3명, 중학교 졸업 5명, 고등학교 졸업 91명, 대학교 졸업 109명, 대학원 졸업 10명, 무응답 1명으로 나타났다.

채무변제가 불가능해진 시점에 대해 2002년~2004년이라는 응답이 45%를 차지하였으며, 2004년~2006년과 2000년~2002년이 각각 18%로 뒤를 이었다. 돈을 빌린 채권기관 중 파산의 원인인 된 것에 대해서는 <그림 1>에서 보듯이 1순위가 카드회사라는 응답이 74%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2순위는 캐피탈 또는 보험회사 등의 제2금융권이 28%로 가장 많았다.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채무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사업자금이 31%로 가장 많았고, 다른 채무 상환이 24%, 사기 또는 채무보증인 15%, 식료품비 등의 기초생활비가 12%를 차지하였다. 채무액을 갚지 못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응답자의 39%가 경기 불황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연체로 인해 이자부담이 너무 커져서라는 응답이 29%, 실직 또는 퇴직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져서라는 응답이 22%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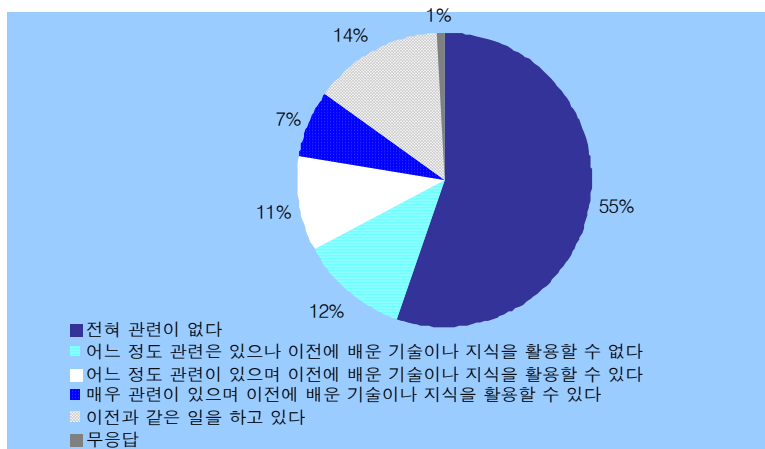
총채무액에 대해서는 5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응답자의 24%, 5000만원 이상~1억 미만인 44%, 1억 이상~3억 미만인 23%, 3억 이상이 9%로 나타났다. 총채무액이 5000만원 미만인

6) 본 설문은 경우 여러 온라인 모임에 가입한 응답자가 중복하여 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지도가 높고 회원수가 많은 모임 하나를 선정하여 그곳에서만 설문을 진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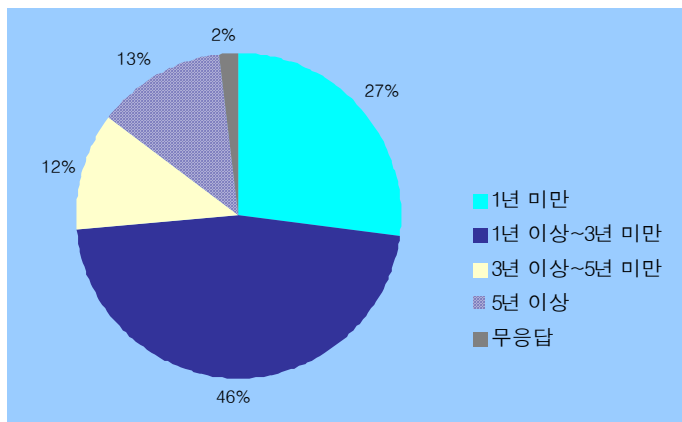


〈그림 1〉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된 채권기관의 종류

경우(53명)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채무 발생 원인으로서는 다른 채무의 상황(35%)과 사기 또는 채무보증(19%)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총채무액이 5000만원 이상~1억 미만인 경우(96명) 지급이 불가능한 채무가 발생한 원인은 사업자금(25%), 다른 채무 상황(24%), 식료품비 등의 기초생활비(19%), 사기 또는 채무보증(14%)의 순이었다. 총채무액이 1억 이상인 경우(68명) 지급이 불가능한 채무가 발생한 원인은 사업자금(57%), 사기 또는 채무보증(15%)의 순으로 나타났다. 파산 전에 하던 일과 현재 하는 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림 2>와 같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응답이 55%로 가장 많았고, 어느 정도 관련은 있으나 이전에 배운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할 수 없다는 응답도 12%를 차지하였다.



〈그림 2〉 파산 전후 하는 일의 관련성 정도



〈그림 3〉 파산 후 정기적 소득을 얻는 일을 찾는데 걸리는 기간

파산 후 경제적 안정에 이르는 기간을 알아보기 위해 경제적 안정의 지표로 정기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일을 찾는 것을 지표로 하였다. 예상되는 기간은 1년 이상~2년 미만이 31%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21%, 2년 이상~3년 미만이 16%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후 경제적 안정에 이르는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금융거래의 제한(36%)을 꼽았으며, 취업에 있어서 파산자에 대한 차별이 26%로 뒤를 이었다. 파산을 신청할 때 가장 걱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파산 후 금융거래, 취업 등 경제활동 제약이라는 응답이 51%를 차지하였으며, 파산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23%로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절차를 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심리적 부담감과 파산진행 중 계속되는 채권추심이 59%로 가장 많았으며, 파산절차에 드는 비용마련이 23%로 뒤를 이었다. 파산 후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응답자의 51%가 금융활동 제약이라고 답하였으며, 취업이 18%, 거주지 마련이 14%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제도적 지원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물음에 파산자 또는 파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37%, 파산절차를 위한 법무사 혹은 변호사 선임료 보조가 21%, 파산자의 기술,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취업기회 알선이 20%, 전문가와의 금융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채무해결 방안 모색이 16%를 차지하였다. 파산 전 월소득에 대해서는 100만원~199만원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299만원이 23%, 50만원~99만원이 14%, 300만원~399만원이 9%의 순으로 나타났다. 파산 전 생활비와 채무이자 등을 포함한 월지출액에 대해서는 월소득을 초과하였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으며, 월소득의 50% 이상~70% 미만이 18%, 월소득의 70% 이상~90% 미만이 13%, 월소득의 90% 이상~100% 미만이 10%의 순으로 차지하였다.

참고문헌

- 김난도, 「소비자파산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1998
- 김범식·전효찬, 「최근 개인파산의 현황과 시사점」, 2000
- 김형두, 「소비자도산에 관하여」, 2006
- 노진호, 「개인 파산 및 회생 제도 도입과 보완 과제」, 2004
- 박덕배, 「우려되는 일본 '불항형' 개인 파산」, 2006
- 박종현, 「신용불량자 문제와 그 대응방향」, 2003
- 유경원, 「최근의 개인파산 급증현상과 정책과제」, 2005
- 유경원, 「우리나라 개인파산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2006
- 전효찬, 「개인파산의 급증과 대책」, 2001
- 한국개발연구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 2005